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한국환경공단

# - 순 서 -

- 1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개요
-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 3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및 감면
- 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절차
- 5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등 방법
- 6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납부 등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개요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부장관은 ..... 폐기물을 순환이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 Q 폐기물처리비용 또는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X (부과금)

## 2.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법률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부터 제24조(이의신청)
-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6조(폐기물처리처분부담금의 용도)

Q 법률 공포 : 2016.5.29, 하위법령 공포 : 2017.12.29  
(시행일인 2018. 1.1 이후 소각·매립 한 폐기물에 적용)

###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제46조 회계의 세입)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시행령 제26조]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시설 개선 등
-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지원 사업
-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 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 1. 부과대상 폐기물

(법 제21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아래 건설폐기물 제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5톤 이상의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Q 모든 폐기물이 대상. 단,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은 제외 (세부적인 종류는 시행령 별표6 참조)

## <참고>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 (순환이용 할 수 없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제2항 제1호

###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트드비페닐(PCBs)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

###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6.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

7.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

8.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Q 재활용 금지대상 폐기물은 부담금 신고 X (이외의 폐기물은 처분부담금 대상 폐기물에 해당)

## 2. 부담금 납부의무자

(법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생활폐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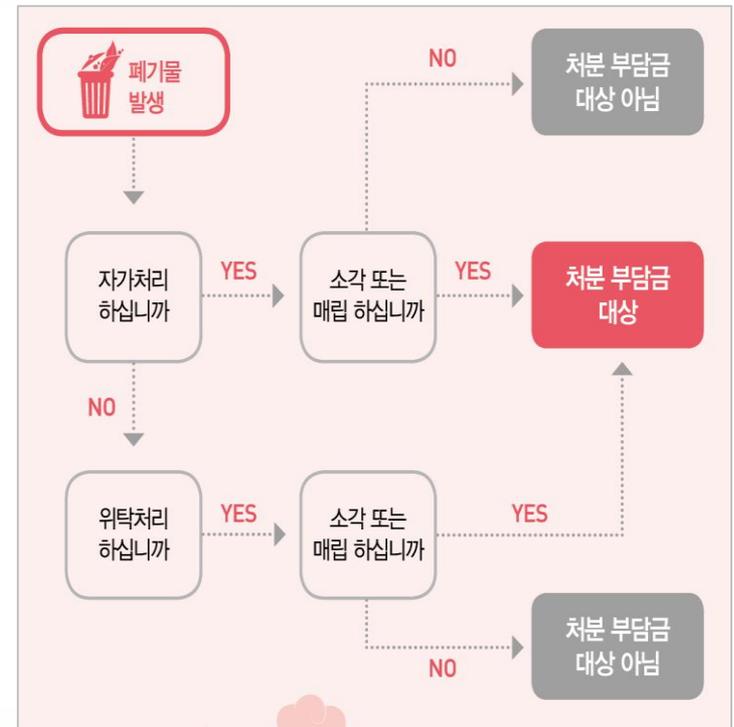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Q 자가 및 위탁하여 처분(소각·매립)하면 납부의무자에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 범위 기준

## <참고> 사업장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폐기물배출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신고번호 제 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사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납부의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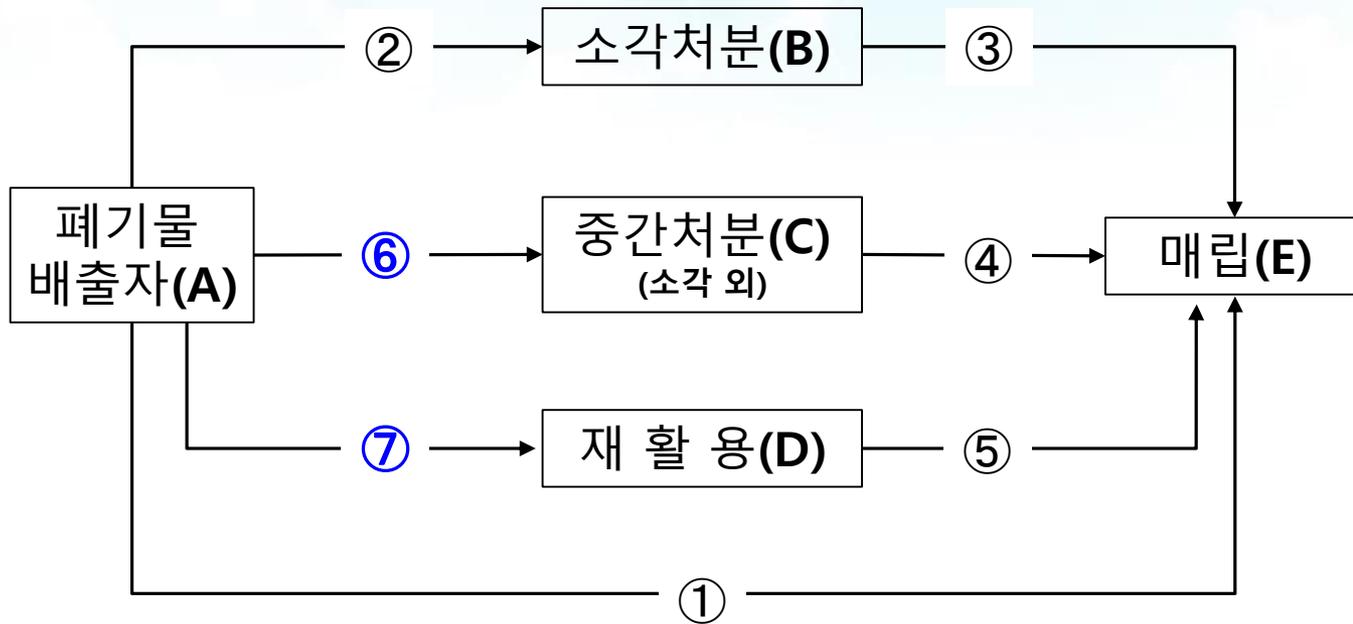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 제1호에 가목에 해당하는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일반소각시설
  - ② 고온소각시설
  -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을 포함한다)
  - ④ 고온 용융시설
  -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에서 ④까지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3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 ① 차단형 매립시설
  - ② 관리형 매립시설

Q 소각 또는 매립시설 투입 기준이며,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은 **부과·신고 대상 X** (소각·매립하는 잔재물은 대상)

## <참고> 폐기물 처리 체계에 따른 납부의무자



- ①,② :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폐기물배출자(A)가 납부의무자에 해당
- ③,④,⑤ : 새로운 폐기물배출자가 되는 B,C,D가 납부의무자에 해당 (공동처리 포함)
- ⑥,⑦ : 재활용 또는 소각외 중간처분일 경우 A는 납부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 3.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 및 감면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법 제21조제3항)

처분(소각·매립)한 폐기물의 양에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

$$\begin{array}{|c|} \hline \text{폐기물처분부담금} \\ \hline \text{(원)}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처분한 폐기물량} \\ \hline \text{(kg)}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산출기준} \\ \hline \text{(원/kg)} \\ \hline \end{array} \times \begin{array}{|c|} \hline \text{산정지수} \\ \hline \end{array}$$

- **처분한 폐기물량** : 위탁 또는 자가처리한 폐기물 유형별 소각 또는 매립한 증량 (kg)

\* 정기 신고 : 전년도 처분량(1월 ~ 12월), 수시 신고 : 당해년도 처분량 (공사시작일 ~ 폐기물처분 종료일)

-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18)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를 곱한 값
- **산출기준** : 폐기물 유형별 요율 (「시행령」 별표6)

## <참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시행령」 별표6)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	소각
생활폐기물		15원/kg	10원/kg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10원/kg	-
	가연성	25원/kg	10원/kg
건설폐기물		30원/kg	1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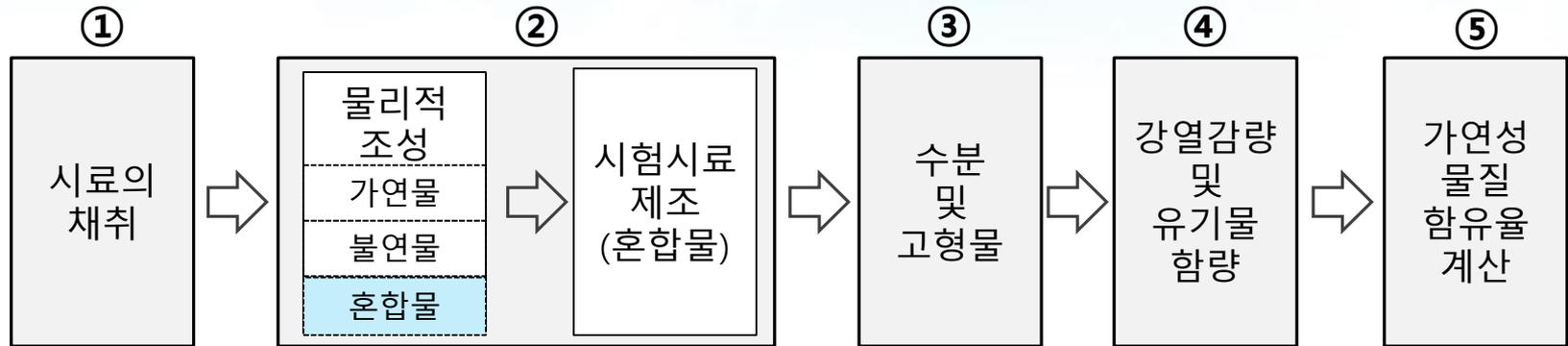
- (불연성폐기물)**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수지),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축매(금속성 폐축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재(광물류로 제조된 경우),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다만 배출단계에서부터 두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 폐기물로 본다.
  -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 요율 적용

Q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 5% 미만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분기별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기준 (예규제4조)

# <참고> 폐기물의 가연성 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절차와 방법

❖ 가연성 물질 함유량이 5% 미만임을 증명: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매 분기별로 작성한 폐기물 시험분석결과서 필요

영 별표6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분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혼합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가연성 물질의 함유량을 분석하는 절차와 방법(환경부)



- ①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충분한 양의 시료를 채취(ES 06130.c)
- ② 가연물과 불연물을 최대한 먼저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은 물질은 혼합물로 분류. 혼합물을 시험재료로 수분,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 분석 실시
- ③ 혼합물에 대하여 [수분 및 고형물-중량법]으로 수분 및 고형분 측정(ES 06303.1a)
- ④ 혼합물 건조 시료로 [강열감량 및 유기물함량-중량법]으로 가연분 측정(ES 06301.1c)
- ⑤ 가연성 물질 함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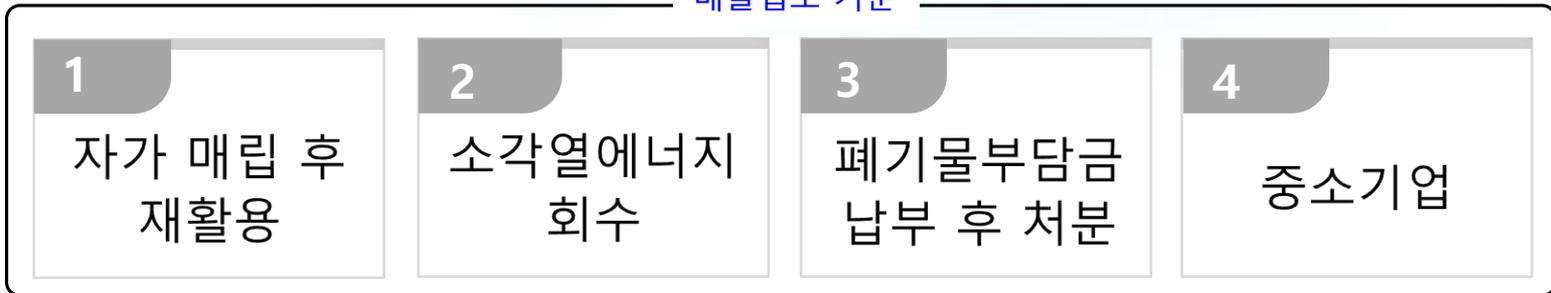
$$\frac{\text{가연물} + \text{혼합물 내 가연물}}{\text{시료}} \times 100$$

$$* \text{혼합물 내 가연물(kg)} = \text{혼합물} \times \frac{\text{고형분}}{100} \times \frac{\text{가연분}}{100} \times \frac{100}{100-\text{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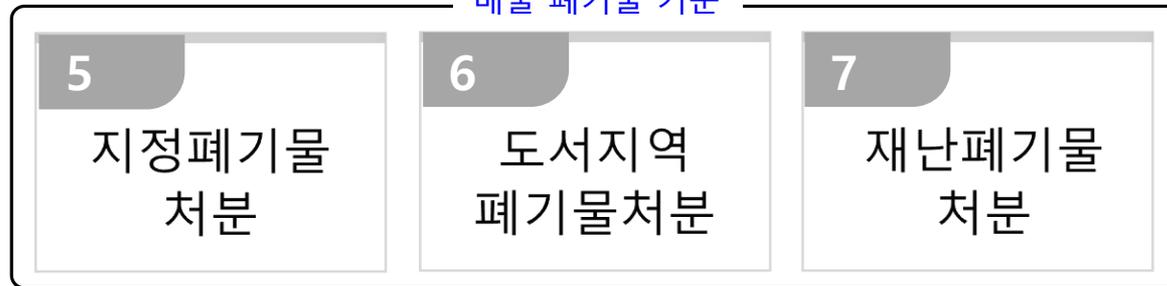
##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기준

(「시행령」 별표5)

### 배출업소 기준



### 배출 폐기물 기준



⇒ 7개 기준 중 2개 이상의 감면대상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만 적용

Q 감면 기준은 부담금신고 및 감면신청 시 적용되므로 100% 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신고·신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이 신청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조정

# 1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 감면대상 ]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자가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는 부과 대상자

## [ 감면기준 ]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 까지 재활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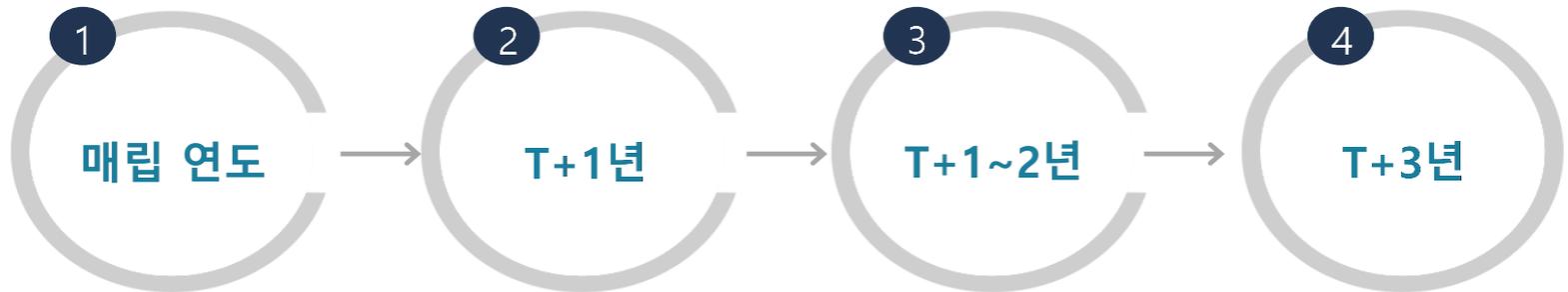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 재활용한 경우

## [ 감면요율 ]

100%

50%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



- 매립 연도 말일까지 재활용 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 매립 후 3년 동안 재활용 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

Q 모든 자가매립지가 대상은 아니며 매립지를 직접 조성 및 재활용 목적 등 1), 2)에 해당하는 자

## [ 감면대상 ]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소각시설  
에서 처분하는 부과 대상자(배출자)

## [ 감면기준 ]

소각열에너지를 50%이상 60%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소각열에너지를 60%이상 75%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소각열에너지 75%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 [ 감면요율 ]

50%

60%

75%

## [ 에너지회수효율 산출 ]

- 1) 폐기물 소각하는 과정의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고,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2)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 3) 2)에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신청

Q **감면대상자**는 소각시설을 설치·운영자가 아니며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임

### 3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 감면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 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한 부과 대상자

#### [ 감면기준 ]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 감면요율 ]

100%

###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 감면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 부과 대상자

#### [ 감면기준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감면요율 ]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

### 5 지정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

#### [ 감면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부과 대상자

#### [ 감면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 감면요율 ]

100%

## 6 도서지역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 [ 감면대상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부과 대상자

\* 도서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 감면기준 ]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 폐기물을 도서 내에  
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 감면요율 ]

100%

## 7 재난 폐기물 등 소각 또는 매립

### [ 감면대상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  
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부과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장 등)

### [ 감면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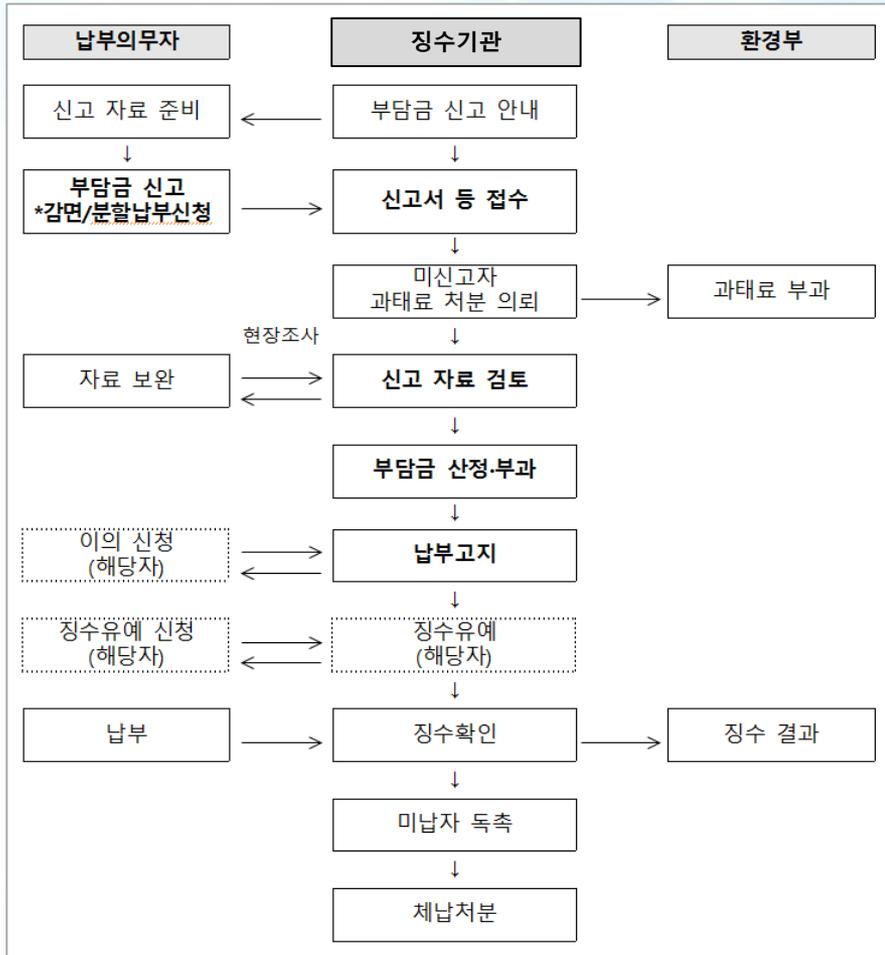
1)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난복구계획  
또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2) 1)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  
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재난피해 증명서류 발급받은 경우)

### [ 감면요율 ]

100%

# 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절차



## 징수기관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 생활폐기물 :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부과종류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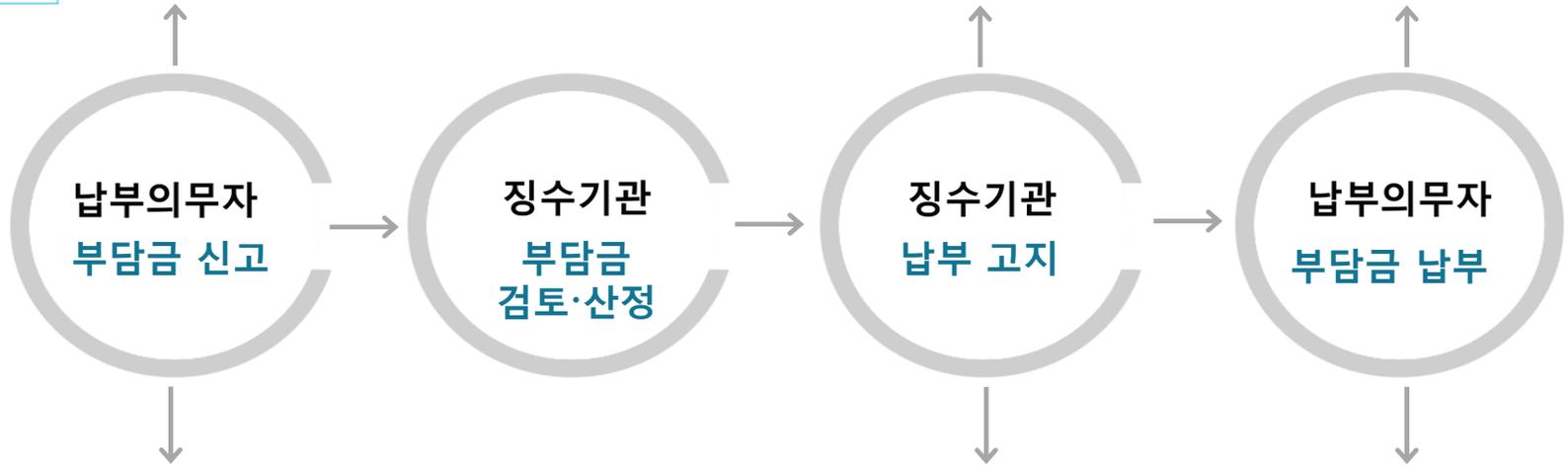
- 정기부과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
- 수시부과 : 건설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연도 중 폐기물 배출이 종료되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 (징수기관 조사·확인 부과 포함)

## 부과·납부시기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 정기 부과

~매년 3월 31일



### 수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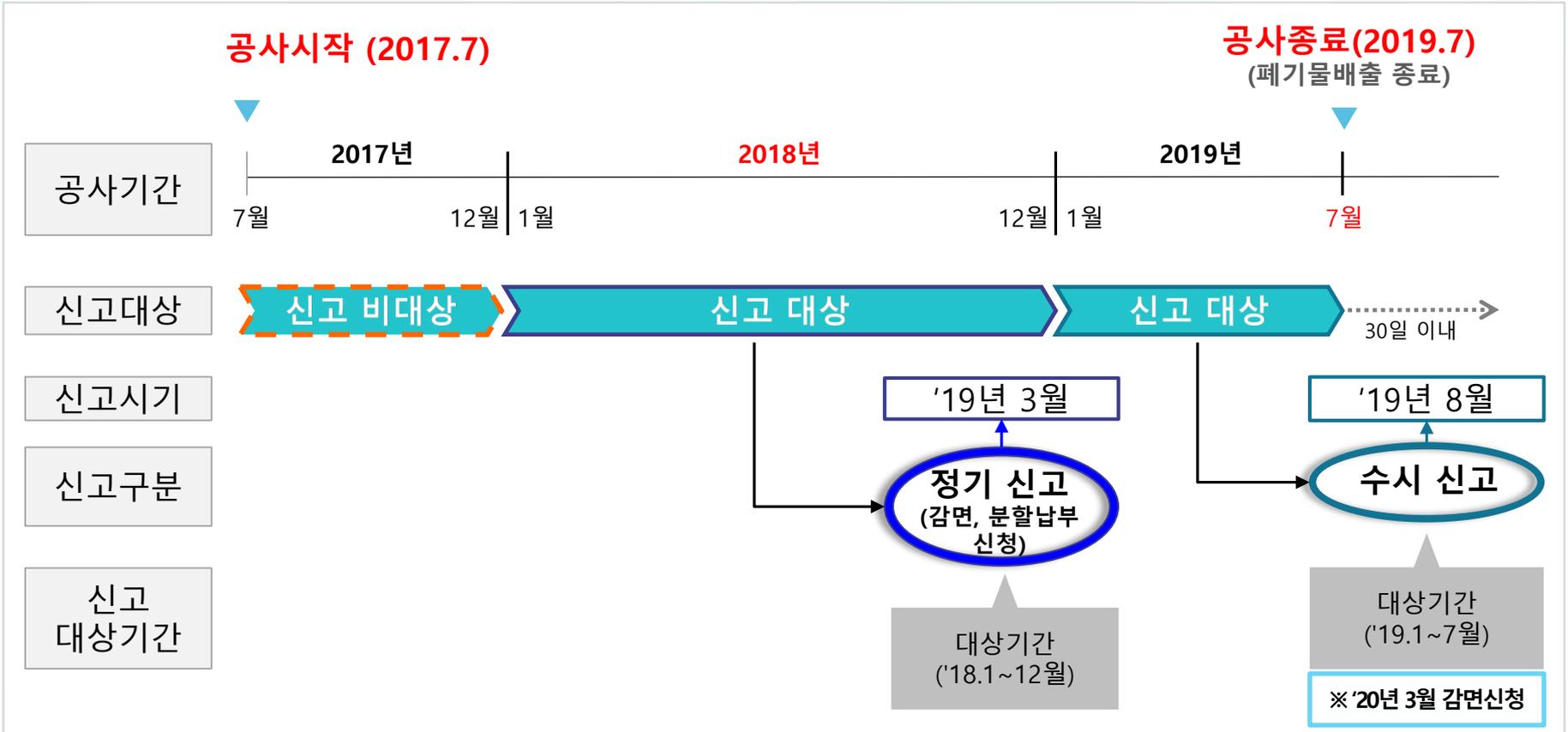
배출종료 후  
30일 이내

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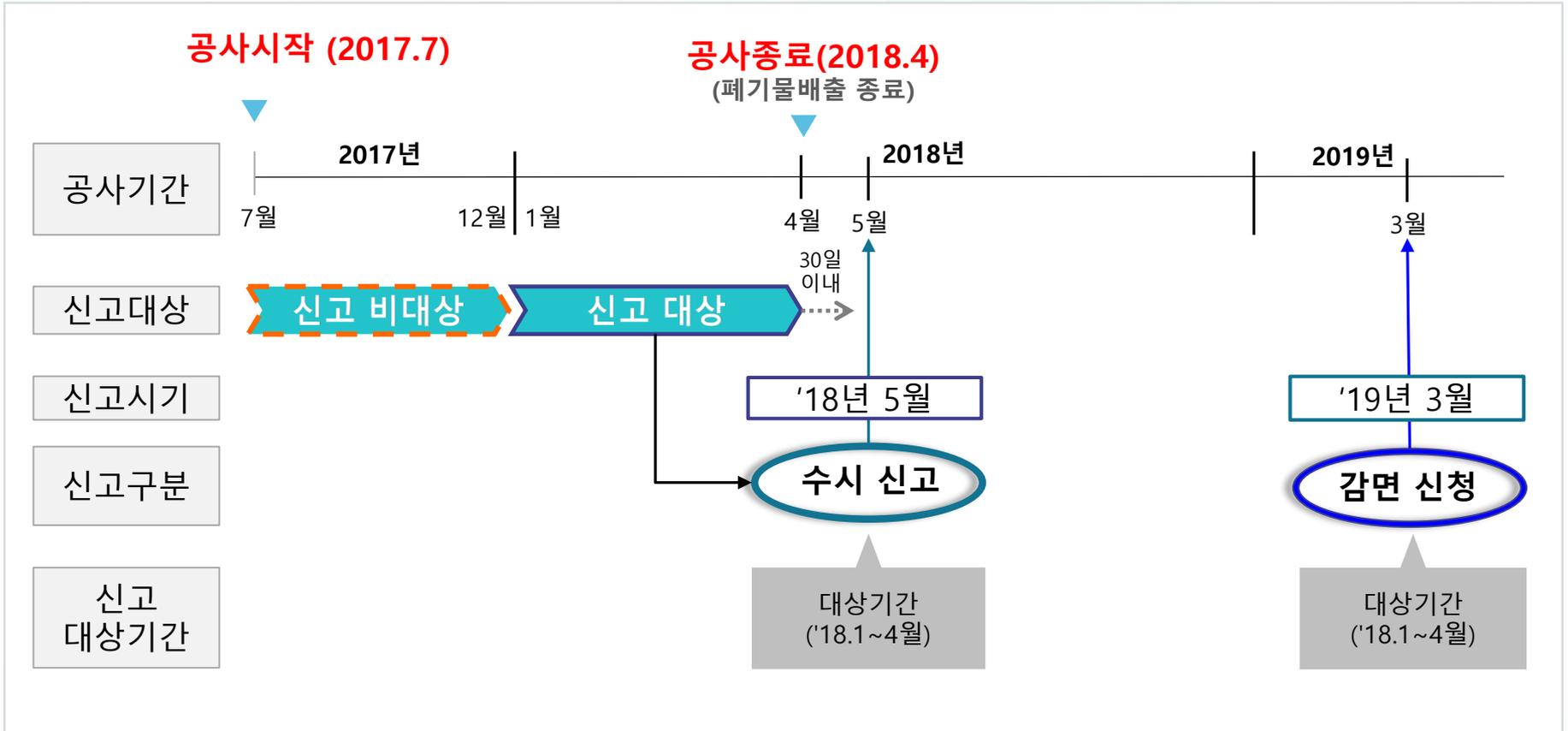
※ 수시신고 시 감면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청. (단, 지정폐기물/도서지역 폐기물 처분은 수시신고 시 감면 신청)

# [ 신고 예시 1 ]



※ 연도를 넘는 경우 폐기물처분량은 정기신고하고, 연도 중에 배출이 종료되는 경우 수시신고

## [ 신고 예시 2 ]



※ 수시신고 시 대상기간('18.1월~4월)에 대한 감면은 '19년 3월까지 신청.

단, 지정폐기물 및 도서지역 폐기물은 수시신고 시 감면 신청

# 5.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등 방법

## 1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신고서

- 신고인(사업장 등)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연간 매출액 및 총폐기물 처분량
- 신고내용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폐기물유형, 처분방법, 처분량 등)
- 납부금액 및 총 신고금액

### 첨부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해당자)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사본(해당자)
-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신고필증 사본(해당자)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자가처리)
- 폐기물 유형,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 증빙자료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주)○○○산업	업종 ○○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56789						
	성명(대표자) 홍길동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111111-00000							
	주소(사업장) ○○광역시 중구 환경로 700	(전화번호 : 032-000-0001)							
담당자	성명(작성자) ○○○	직위 과장	전화번호 032-000-0005						
납부의무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가매립 후 재활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각열에너지회수, <input type="checkbox"/>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정폐기물처분, <input type="checkbox"/> 도서지역폐기물처분, <input type="checkbox"/>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10,000,000,000 원				총 폐기물 처분량		250,000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자가 위탁	폐기물 처분량 (kg)	요금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폐기물 매립	폐식고	51-12-01	2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80,000	10	1	8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신고금액(원)								800,000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자가 위탁	폐기물 처분량 (kg)	요금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폐기물 소각	제한성수지류	51-03-01	3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70,000	10	1	700,000	
	재재부산물	51-20-02	3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000	10	1	1,000,0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총 신고금액(원)								1,700,000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매립량 (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 (kg) 당해 1년차 2년차	3년 이후 미재활용량 (kg)	요금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해당없음						50%		
폐기물처분부담금 총 신고금액(원)							2,500,000		

## 2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신청서

- 신청인(사업장 등)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연간 매출액 및 총 폐기물 처분량
- 신청내용 (폐기물종류, 분류번호, 처분방법, 처분량, 처분부담금 등)
- 감면사유, 감면금액

### 첨부서류

- (에너지회수 감면) 소각 처분한 폐기물 양에 대한 증명자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
- (폐기물부담금 감면) 폐기물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사본, 납부대상 제품 등 처분량 증명자료
- (중소기업의 감면)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지정폐기물 감면) 지정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원순환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www.buda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록)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

\* 「자원순환기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주)○○○산업개발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9			법인(주인·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명(대표자) 이태백	전화번호 031-000-0001							
	주소(사업장) 경기도 00시 환경로 700								
자가매립시설현황	허가일시	사용기간	매립대상 폐기물종류						
	2012.10.8	25년	(51-13-03)석단체						
	총매립지면적 (㎡)	총매립용량 (㎡)	기 매립량 (㎡)	잔여 매립량 (㎡)					
4,123,567	4,123,567	187,645	3,668,832						
신청내용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자가매립량 (kg)	해당연도 재활용량			해당연도 매립잔량		총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감면금액 (원)	중량 (kg)	감면율 (%)		감면금액 (원)
석단체	51-13-03	125,000	25,000	100	250,000	100,000	50	500,000	750,000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실적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00-00-00)	자가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내 미재활용량(kg)			
			당해	1년차	2년차				
석단체	51-13-03	73,000(2018)	25,000	18,000	22,000	8,000			
		64,000(2019)	19,000	20,000		25,000			
		125,000(2020)	25,000			100,000			
「자원순환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2021년 3월 28 일</span>									
한국환경공단 귀하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									
첨부서류	1. 「자원순환기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 「자원순환기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명 확인 사람	폐기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폐기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신청인이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질지(80g/㎡))

### 3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시행령 제19조제3항

#### 신청대상

- 정기신고 납부의무자
- 산정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방법

- 분할납부 신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

#### 납부방법

- 2회에 걸쳐 절반씩 나누어 납부

1회분

5월 20일 까지

2회분

10월 20일 까지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분할납부 신청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금액(원)
분할납부하려는 횟수 및 금액	기 별	납부일자	납부금액		
	제1기	5월 20일			
	제2기	10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

처 리 질 차

신청서 작성 <small>신청인</small>	→	접수 <small>처리기관: 시·도 또는 한국환경공단</small>	→	검토	→	결재	→	분할납부 고지 <small>신청인</small>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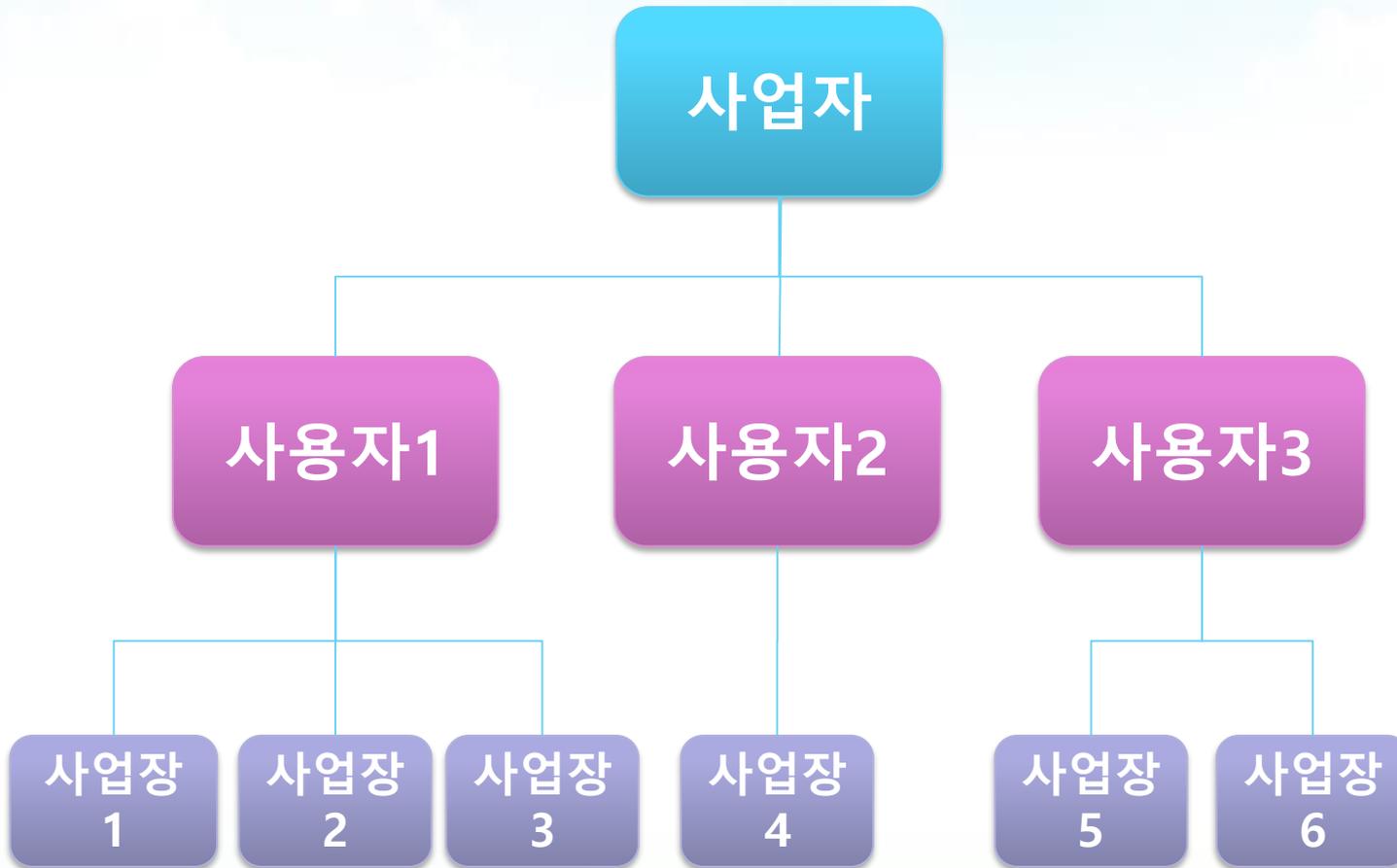
## 4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신고 등

[www.budamgum.or.kr](http://www.budamgum.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감면 신청서 제출, 분할납부 신청 등 가능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제출 가능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회원가입 체계



## 5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검토

[ 예규 : 사무처리규정 제5조 ]

### 검토내용

신고자료	감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의 적정성</li> <li>-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의 적정성</li> <li>- 자가 또는 위탁 처리하는 처분시설의 적정성</li> <li>- 적용 요율 등 산출기준 적용의 적합성</li> <li>- 기타 제출된 분석서 등 증명자료의 적정성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담금 감면대상의 적정성</li> <li>- 부담금 감면대상이 되는 폐기물량 적정성</li> <li>- 부담금 감면대상 폐기물 처리방법의 적정성</li> <li>- 부담금 감면기준 적용의 적합성</li> <li>- 기타 감면대상 인증서, 시험분석의 적정성 등</li> </ul>

### 검증방법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그 밖에 처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으로 검증

##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운영자의 자료 제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법 제21조제9항)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대장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 폐기물 중간·최종처분 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1.21.> (앞쪽)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② 위탁내용						③ 처분방법별 처분내용					보관량	④ 잔재폐기물 처리내용				결재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소재지	성질·상태	위탁량	운반업소명	위탁량누계	소각	고온열분해	고형화안정화	기타방법	처분량누계		폐기물종류	발생량	처리자	처리방법	

## 6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고지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납부고지서를 전산출력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직접교부 가능)

산출 근거

납부 안내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용)**

납부 번호			
회계연도	회 계	소 관	징수관 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의측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년 월 일

산출 근거

납부 안내

**폐기물처분부담금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 번호			
회계연도	회 계	소 관	징수관 계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납부자	업체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문의처 :

년 월 일

## 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이의신청

시행령 제24조(이의신청)

### 신청대상

- 12월 31일 이전 폐기물 배출 종료로 인한 **납부 고지를 받은 자 (수시신고)**
- 매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 (**정기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금액의 환급을 받은 자

### 신청시기

- 납부고지 이후** 또는 감면금액을 반환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년	월	일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b>한국환경공단 이사장</b> 귀하				
접수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없음

## 8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유예

시행령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 신청사유

-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환경부장관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예대상

- 납부의무자가 신청사유로 납부기한 전까지 처분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징수기관이 인정 시

### 유예·납부

- 징수 유예(6개월 이내) 및 분할납부(3회 이내) 가능

\* 징수유예 연장 : 위의 사유가 계속되어 징수유예 기간 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징수유예 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단,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요구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www.budamgum.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록)

**폐기물처분부담금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징수번호	징수일시	처리기간	7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주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금액
연도(분기)	발행번호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이유				
징수유예(기간 연장)를 받으려는 기간				
20 . . . . .부터 20 . . . . .까지				
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				
횟수	연도(분기)	발행번호	분할납부 기한	분할납부 금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 ] 징수유예, [ ] 분할납부 또는 [ ]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급 등

### 부담금 환급

시행령 제23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환급)

- **과오납된 금액**이 있거나 **감면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해당 **납부자에게 지급**

### 가산금 부과

법 제21조 제5항

-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체납 처분

법 제21조 제6항

- **독촉을 받은 자**는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미납 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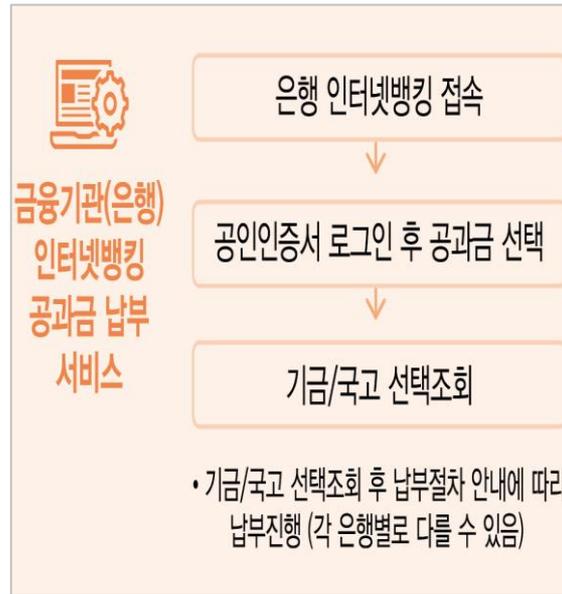
# 6.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납부 등

## 1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방법

###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 인터넷 뱅킹 (국고금 수납은행)



### 고지서 납부 (국고금 수납은행)

지왕수납기관인 사업과지 (별지 제15호지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1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원본 (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년	월	일	원	원

세입징수관: \_\_\_\_\_

170mm×105mm (인산용지)

(제 2 면)

산 출 근 거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지서 결 영수증 (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주소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년	월	일	원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은행  
우체국

170mm×105mm (인산용지)

\* 참고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납부일로 지정 (수수료: 납부금액의 1%)

감사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본사 폐기물처분부담금팀  
(Tel. 032-590-5082~5088, 5091)